

# NEWS LETTER

2024-12-02

## Legal Issue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고발장 작성 관행 변경의 필요성
- 설계도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 부분의 구별 기준

## MINWHO News

- 맞춤형 광고 SDK 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여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
-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이끌어 승소



## Legal Issue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고발장 작성 관행 변경의 필요성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내부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고발장 양식대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한 사안에서, 고소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것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고,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부산지방법원 1심의 판결 요지인데, 이에 대해 기업의 문의도 많다.

관련해서 2022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안에서 2가지 중요한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은 고소인 A가 조합 퇴사 시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형사고발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첨부해서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피의자 신분의 B가 타인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B가 타인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목적 외 제공이라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퇴사자가 보유 중인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이고, 근무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위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2022년 대법원의 두 판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은 과거 임직원이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일탈행위를 저지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임직원 관련 서류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관행을 유지하면 제출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방법은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피고소 임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그런데 형사처벌 당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동의를 하는 사람은 흔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입사 초기나 매년 계약 갱신할 때,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동의를 얻어 놓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게 영장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흔한 광경이 아니고, 고소인의 심리적 저항도 있을 수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수사기관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목적외 이용이나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내용만 적고,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이 제출 요청해서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기업의 임직원 고소장·고발장 작성 관행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관행을 빨리 버리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관행이 잘 정착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 Legal Issue

### 설계도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 부분의 구별 기준

양진영 대표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저작권법의 원칙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은 표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며, 아이디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대상으로 실질적 유사성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기능적 저작물인 지도, 도면, 설계도,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적 저작물인 '지도, 설계도 등 도형저작물'에 대해, 판례는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고 하여, 도형 저작물의 경우 오히려 창작적인 부분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또다른 기능적 저작물인 '건축저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기능적인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어문저작물의 하나이면서 보도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뉴스기사'에 관하여 판례는, 「뉴스기사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334판결).」한다면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참조).」하고 있다.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창작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받은 범위를 확정지을 수 있고, 이러한 확정은 저작권법위반죄의 양형,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저작물에 비해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을 가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 MINWHO NEWS

### 맞춤형 광고 SDK 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여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

**맞춤형 광고 SDK 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여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

피고인 A(의뢰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특정 광고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앱에 포함시켜 광고를 노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SDK가 광고 목적으로 설계된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로, 악성 프로그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DK의 기능과 사용자 정보 수집 방식이 광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며, 사용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동의 과정을 거쳤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SDK의 작동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선 해당 SDK가 정상적인 경로로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가 사용한 SDK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며, 정보통신망 침입 방조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협의 사건에서 협의 없음 불기소처분 이끌어 승소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협의 사건에서 협의 없음 불기소처분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협의에서 무협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설명 및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상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영업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넘어갔으나, 본 법인의 변호 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http://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